#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80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김소희

정희용 · 김기웅 · 권영진

김선교 • 김대식 • 조은희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5~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3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 하여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 중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관한 개정부분(제6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등) ①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 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 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
  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
  - 1) (생략)

에 상당하는 세액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
  - 가) 위기지역,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u>성장촉</u> 진지역 또는 인구감 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

가	
1) (	 현행과 같음)
2)	선생각 실금)
<i></i>	
가	·)
	<u>성장촉진지</u>
	역, 인구감소지역 또
	역, 인구감소지역 또         는 「농업·농촌 및

촉진지역등"이라 한 다)으로 이전하는 경 우: 7년 나) (생 략) 3) (생 략) 나. (생 략)

 1. (な 引)

 2 ~ 9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